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6,839,679	14,605,190
일반회계	454,051,953	13,621,559
특별회계	32,787,726	983,632
기타특별회계	32,787,726	983,6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04,853	117,14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411,562	402,347
수질개선특별회계	7,421,976	222,65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8,890	2,96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966,774	29,003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81,398	2,442
주차장특별회계	61,050	1,832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8,804	264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357,229	130,717
행복주택특별회계	1,908,394	57,252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566,796	17,00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